◉국토교통부고시제2022-00호

전라남도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(변경)

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0월 00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투자선도지구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

가. 명　칭 : 전라남도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

나. 위　치 :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35-162번지 일원

다. 면　적 : 318,564㎡

2.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, 시행기간(변경)

가. 지정목적

○ 함평군의 여건상 관광 연계산업 부족, 재정자립도 열세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대두

○ 무안-광주간 고속도로, 서해안고속도로, KTX(함평역) 운행 등 SOC 확충과 빛고을 산업단지, 광주전남혁신도시의 배후지로 산업입지 여건 개선

○ 급변하는 지식기반 시대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농공단지 6차산업화를 위해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주력산업의 집중적 육성 필요

나. 지정 필요성

○ 광주광역시·나주시 등 주변 도시와의 접근과 지역특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필요기반시설 정비 및 주변 상권과 연계한 우수농수축산물의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 유도

○ 지역특화자원을 이용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필요 용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 산업 유치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, 기반시설 확대,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기반 강화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다. 시행기간 : **(당초) 2018년～2022년 → (변경) 2018년～2023년**

3.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4. 투자대상, 투자규모,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(변경)

가. 투자대상 : 전라남도 함평군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

나. 투자규모 : 총 사업비 479.9억원

다. 고용규모 : '22년까지 누적 934명(지역주민고용 504명)

라. 사업내용

○ 위치 :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35-162번지 일원

○ 사업비 : 479.9억원(조성비 301.3 / 기반시설설치비 83.6 / 기타 95)

○ 면적 / 시행기간 : 318,564㎡ / **(당초) 2018년～2022년 → (변경) 2018년～2023년**

○ 주요 유치업종 및 기관 : 주변 도시와의 접근과 지역특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필요 기반시설 정비 및 주변 상권과 연계한 우수농수축산물의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특화농공단지 개발

마.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 분	면적(㎡)			비율(%)	비 고
	당초	**변경**	증감		
합 계	318,564	**318,564**	-	100.0	
산업시설용지	200,456	**195,315**	감) 5,141	61.3	
지원시설용지	17,597	**17,564**	감) 33	5.6	
지원시설	3,086	**3,051**	감) 35	1.0	
음식특화거리	14,511	**14,513**	증) 2	4.6	
공공시설용지	100,511	**105,685**	증) 5,174	33.1	
도로	31,419	**32,758**	증) 1,339	10.3	
주차장	5,471	**5,318**	감) 153	1.7	
수질오염방지시설	5,300	**5,297**	감) 3	1.7	
유수지	7,597	**7,953**	증) 356	2.5	
공원	14,061	**17,476**	증) 3,415	5.4	
녹지	36,663	**36,883**	증) 220	11.5	

5.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6.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7.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(안)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8.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9.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(변경없음)

○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

10.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(061-286-7364) 및 함평군 미래전략실(061-320-1598)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.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